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65

발의연월일: 2025. 3. 12.

발 의 자 : 임이자 · 우재준 · 유용원

김소희 · 김위상 · 조지연

김형동 · 김미애 · 신성범

이상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률안 심사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항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,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등 여러 법률과 중앙행정기관에 걸쳐 있어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. 또한, 기후위기 대응의종합성과 정책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구를 마련한 필요성이 지적됨.

이에,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할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법률안과 예산을 체계적으로 심사하고, 정부의 기후위 기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·보완함으로써 국회 내 기후위기 대 응 의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며,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법률과 예산의 법적 근거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포함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써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자 함(안 제37조 및 제45조의2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14호가목 중 "사항"을 "사항(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및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등과 이와 관련된 법률은 제외한다)"으로 한다.

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의2(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둔다.

- 1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, 「온실가 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등과 이와 관련된 법률 안 심사
- 2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(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포함한다) 및 결산,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(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다)에 대한 예비심사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 제시
- 3.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 의한 안건 심사

- ②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 의에 따라 정한다. 이 경우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위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.
- ③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,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④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
- 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⑥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선임에 관하여서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- ⑦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법률안 등 의안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

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·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중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사항은 해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 중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 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계류 중 인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	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
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	
항은 다음과 같다.	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14. 환경노동위원회	14
가.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<u>사</u>	가 <u>사</u>
<u></u> কু <mark>্</mark> টি	<u>항(「기후위기 대응을 위</u>
	한 탄소중립・녹색성장 기
	본법」 및 「온실가스 배
	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
	한 법률」 등과 이와 관련
	된 법률은 제외한다)
나. (생 략)	나. (현행과 같음)
15. ~ 17. (생 략)	15. ~ 1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45조의2(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
	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
	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
	특별위원회를 둔다.
	1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
	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<u>」</u> ,
	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
	거래에 관한 법률」 등과 이

- 와 관련된 법률안 심사
- 2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 소중립・녹색성장 기본법」
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(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포함한다) 및 결산,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(추가 경정예산안을 포함한다)에 대한 예비심사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의견 제시
- 3.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 련하여 의장이 국회운영위원 회와 협의한 안건 심사
- ②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. 이 경우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위원은 당연직위원이 된 다.
- ③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

하며,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

- ④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위기대응특별위 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 서 선거한다.
- 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⑥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선임에 관하여서는 제41조제3 항부터 제5항까지,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- ①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